

종합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

2023. 하반기.

□ 처분요구일람표

1.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주의)	3
2.	매식비 집행 부적정	(주의)	7
3.	용역 분리발주 부적정	(주의)	8
4.	계약 이행 검사 소홀	(주의)	11
5.	보상금 과목해소 등 집행 부적정	(주의)	13
6.	성범죄의 경력 조회 업무 소홀	(시정)	15
7.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주의)	17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소홀	(주의)	19
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증명서 확인 소홀	(주의)	21
10.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 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미확인	(주의)	23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 □□□□□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추진하였다.

기념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기념관이 공무직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공고 후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고 신원조사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 공고문과 채용절차가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관서는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공고 후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했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 공고문과 채용 절차가 부합하도록 하여야 했다.

1. 채용공고절차 미준수 관련

그런데 위 관서는 1년 이상 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을 모집하면서 기념관이 소 재한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 ◇◇◇◇◇◇(0000.00.00.)를 근거로 규정 에도 없는 “특별채용”을 공고 없이 추진하였고 그 결과 △△△, ○○○, ◇◇ ◇를 채용하여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사용하였으며 0000. 00월 상기 3 명의 근로기간을 0000.00.00.까지 연장하였다.

한편, 위 관서는 청송군으로부터 운영을 수탁받은 항일의병기념공원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청송항일의병기념공원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서」를 근거로 규정에도 없는 “특별채용”을 공고 없이 추진하여 그 결과 ▲▲▲, ■■■을 채용하고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사용하였으며 0000. 00월 당해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0000.00.00.까지 연장하였다.

2. 채용공고내용과 채용 방식 불일치 관련

가. 0000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위 관서가 0000.00.00. 기념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 0000년도 제1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0명 모집인 전시관 해설사의 경우 우대사항에 역사관련 학과 전공자, 기념관이나 박물관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다.

하지만 서류전형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보면 관련학과를 전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우대하는 방법이 불분명하고 전공자가 아니어도 관련 수업을 많이 들으면 오히려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공고문과는 내용이 다르다.

나아가, 0000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을 한 ○○○의 경우 ★★과 ○○○○박물관 등에서 근무를 한 기간이 3년이 넘어 만점인 50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사항을 2년이상 3년 미만으로 산정하여 00점을 부여하였다.

나. 0000년 제3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1) ○○교육실 분야

위 관서에서 0000.00.00. 기념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0000년도 제3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 따르면 ○○교육실 분야의 경우 역사 및 교육학과 관련 전공자, 박물관에서 해설 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험이 있는 자를 우대한다.

그런데 서류전형 심사표에 따르면 이를 우대하는 방식이 불분명하여 관련 수업을 이수했다면 역사 및 교육학과를 전공한 자와 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며 나아가 우대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이 공고문과 서류전형 심사표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표1] 공고문의 우대내용과 서류전형 심사표의 우대내용 비교

공고문의 우대내용	서류전형 심사표의 우대내용
박물관에서 해설 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험이 있는 자	기념관이나 박물관 근무 경험이 있는 자

한편, 서류전형심사표에 따르면 역사관련 학과수업의 경우 1학점에 15시간을 부여하는데 ○○교육실 분야 지원자인 ☆☆☆의 경우 한국 ▲▲▲▲, ◎◎◎◎ ◎ ○○○ 실무연습, 한국 ◎◎◎◎◎, ★★★★★ 운영을 이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총 00점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가 이수한 수업 중 역사관련 학과 수업은 한국 ▲▲▲▲, 한국 ◎◎◎◎◎ 2가지 총 00학점이며 학점 당 00시간을 부여받으면 총 00시간이고 이는 00점을 부여받아야 했다.

2) 독립운동유공자 발굴 분야

위 관서가 0000.00.00. 기념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0000년도 제3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 따르면 독립운동유공자 발굴분야의 우대사항은 한국독립운동사 전공자, 독립운동가 발굴 경험자이다.

그런데 서류전형 심사표에 따르면 이를 우대하는 방식이 불분명하여 관련 수업을 이수했다면 한국독립운동을 전공한 자와 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

한편, 당해 분야 지원자인 ◎◎◎의 경우 독립유공자 발굴 및 상담업무를 0000.00.00. ~ 0000.00.00. (00개월) 기간 동안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독립운동유공자 발굴을 하여 심사표 기준에 따르면 50점 만점에 00점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 발굴 경력과 아무 관련도 없는 ▲▲▲▲ □□□□ □□에서 ○○○○ ○○한 경력과 ☆☆☆☆☆에서 ◇◇◇◇◇◇ 경력을 모두 합하여 경력 3년 이상으로 00점을 부여 받았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관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매식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 ○○○○○○에서는 매식비 지급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매식비 지급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따라서, 위 관서의 임직원 중 관외 출장을 가서 식비를 지급받은 자와 관련해서는 매식비 집행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하지만 위 관서는 0000.00.00.부터 현재까지 00건의 매식비 000,000원을 관외 출장을 다녀 온 00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관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 분리발주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함) ●●●●●●에서는 경북도민들에게 보훈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문화 욕구 충족 계기 마련 등을 위하여 0000.00.00. 기념관 일원에서 경상북도 ○○○○○ ○○○○ ◇◇◇◇을 개최하였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I-9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및 II-4 사업비에는 출자·출연 기관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용역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계약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총칙에 따르면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원 이하 용역 사업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을 제출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기념관 ●●●●●에서는 용역사업 추진을 위한 발주를 할 때에는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 분리발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일 사업은 통합 발주를 하여야 했으며,

발주하려는 단일 사업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용역 사업일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을 제출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기념관 ●●●●●에서는 ○○○○○ ◎◎◎◎ ◇◇◇ 사업계획이 단일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음에도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통합 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지 않고, 사업계획의 산출기초가 부스설치비(0,000천원), 행사진행비(00,000천원)로 나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산출금액과 기타 다른 산출금액을 '0000년 ○○○○○ ◎◎◎◎ ◇◇◇ 관련 공연대행 용역(00,000천원)'과 '0000년 ○○○○○ ◎◎◎◎ ◇◇◇ 행사장 조성 용역(00,000천원)'으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수행하는 단일 사업에 대해 업종이 유사한 두 업체와 0000.00.00. 각각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의 낙찰율을 감안하면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의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은

앞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이행 검사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함) ◇◇◇◇◇에서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등에 따라 계약 등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Ⅱ-④ 사업비에는 공사, 용역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은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념관 ◇◇◇◇◇에서는 공사·용역·물품계약을 했을 때에는 공사 준공, 용역 완료 및 물품 납품으로 계약 이행이 끝나면 공사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이 되었는지 계약담당자가 직접 검사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하거나 소속 직원을 검사자로 지정하여 검사 후 검사조서를 작성케 하여, 이 후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기념관 ◇◇◇◇◇에서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 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장은

앞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보상금 과목해소 등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함) ○○○○○에서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붙임2] 예산 과목 및 과목 해소에 따르면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법령·조례(기관의 정관, 규정)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체육시설 운영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강사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I-③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의하면 예산집행은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기념관 ○○○○○에서는 민간인에게 기타보상금을 집행할 때에는 예산 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법령·조례 등에 따른 시상금품 및 체육시설 운영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강사료 등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는 기타보상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기념관 ○○○○○에서는 기타보상금을 행사에 참가한 민간인에 대해 기념품 등을 제공하여 예산비목별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보상금이 세출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이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은

앞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성범죄의 경력조회 업무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함) ●●●●●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경북의 정체성을 정립·확산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동안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제5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교류활동·문화활동 등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시설인 박물관 등 전시시설은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시설인 기념관¹⁾ ●●●●●에서는 해당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기념관에서는 청소년활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 하였다.

그 결과 기념관 전시관을 관람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추진으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예방 조치가 소홀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은

- ① 앞으로 기념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적정히 처리하시고,
- ② 기념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에 대하여는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결격 여부를 확인토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1)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박물관으로 등록(제 경북-2014-1호)되어 있음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여 보수를 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계약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에서는 감사대상기간인 0000.00. ~ 0000. 00월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하자검사 대상 시설공사 00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하자 발생 여부의 확인도 할 수 없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사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등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은

-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을 따라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설계서를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을 발주·계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4조에 따르면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하며,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 계상기준에 따라 해당 비율(요율)을 곱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관급자재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이라면 대상액에 포함되며,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총공사금액은 재료비(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에서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00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000,000원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은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건설공사에서 해당 금액 계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서 확인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에서는 각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각종 인쇄출판물 제작에 대하여는 그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직접생산확인 조회²⁾ 등 정보를 확인한 뒤 직접생산증명서³⁾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3)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각종 인쇄출판물 제작과 관련하여 직접생산능력이 없는 사업자와 부적정한 0건(계약금액 : 00,000천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작하며 자격이 부족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은

앞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직접생산증명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 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미확인
소 관 청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에서는 각종 물품 및 용역등 계약체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계약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다만, 위에서 말한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고시(제2018-49호)에서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해당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 후

비율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사회적기업의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 원)

연번	계약명	업체명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1	▽▽▽▽ ☆☆☆☆ ★★ 용역	◇◇◇◇○○○○	0000.00.00.	00,000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은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